

2021. 3. 16.(화) 10:00

**제286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3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 경북지방우정청에서 달성우체국 업무시설 활용목적으로 국유재산(구. 화원우체국)과 군유재산(구. 달성군보건소)을 교환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교환을 통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코자 함.
- 교환 후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에 따른 화원읍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현. 달성군민독서실)의 주차장 부지 활용 등 향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함.

○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달성 북부권(다사·하빈)은 인구 10만명 가까이 성장한 지역으로서 인구수와 인구밀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적은 편이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북부보건센터(보건),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보육),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도입한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인프라를 지원코자 함.

- 추가 입주시설 수요조사(군의회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를 통한 세부 시설 변경내용 반영에 따른 규모증가(건축연면적 3,500㎡→5,113.9㎡) 및 사업비 증액(300억→400억)으로 변경 심의 요청

○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 현재 사업지 내 화원읍행정복지센터(1990년 준공), 보건지소(1987년 준공)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매우 노후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최근 화원읍을 비롯한 반경 5km 이내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복지적 수요를 뒷받침할 공공복합시설의 건립이 요구됨.
- 따라서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와 문화·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교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교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주요내용

○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 기 간 : 2019. 9. ~ 2021. 5.
- 요청기관 : 경북지방우정청
- 내 용 : 국유재산(구. 화원우체국)과 군유재산(구. 달성군보건소)교환
- 용 도
 - 구. 달성군보건소(경북지방우정청) : 달성우체국 업무시설 활용
 - 구. 화원우체국(달성군) : 화원읍사무소 임시청사 주차장 부지 활용 등
- 교환방법 : 상호목적물 취득 및 교환차금 정산
 - 구. 달성군보건소 ⇔ 구. 화원우체국 + 교환차금
- 교환대상

(단위 : 억 원)

구 분	위 치	면 적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면적(m ²)]	비 고
구. 달성군보건소	현풍읍 원교리 93-1	부지 1,484m ² 건물 1,672.1m ²	25	달성군 소유
구. 화원우체국	화원읍 천내리 454-4	부지 618m ² 건물 185.78m ²	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소유 (재산관리청 : 경북지방우정청)

○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위 치 :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 기 간 : 2018. 3. ~ 2023. 7.
- 규 모 : 부지면적 14,979.2m², 건축연면적 5,113.9m²(지상3층)
- 주요시설 : 북부보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영주차장 등
- 총사업비 : 400억 원(군비)
 - 부지비 210, 공사비 151.5, 설계·감리비 21.7, 부대비 0.4, 예비비 16.4

- 변경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사업규모 (연면적)	3,500㎡	5,113.9㎡	1,613.9㎡ 증가
주차대수	100면	150면	50면 증가
총사업비	300억 원	400억 원	100억원 증가
시설용도	다사건강생활지원센터 육아보육지원센터	북부보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부지비	210	210			
공사비	151.5			91.0	60.5
설계비	8.9		8.1	0.8	
감리비	12.8			6.4	6.4
시설부대비	0.4			0.2	0.2
예비비	16.4			8.4	8.0
계	400	210	8.1	106.8	75.1

○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 위 치 :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외 4필지(현. 화원읍행정복지센터)
- 기 간 : 2014. 6. ~ 2024. 6.
- 규 모 : 부지면적 6,274㎡, 건축연면적 18,856㎡(지하2층/지상7층)
- 주요시설 : 화원읍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

- 주민편의시설 :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 문화의 집,
장난감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다목적 체육관,
달성시니어클럽 늘봄카페
- 총사업비 : 799.9억 원(군비)
 - 용지보상비 135.8, 공사비 526.1, 설계·감리비 61.1, 기타 76.9
-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용지보상비	135.8	135.8				
공사비	526.1		4.1	179	228.7	114.3
설계비	34.8		14.1	20.7		
감리비	26.3			8.1	12.1	6.1
시설부대비	1.20			0.4	0.6	0.2
기타비용	15.3			0.6		14.7
예비비	60.4		1.8	20.9	24.1	13.6
계	799.9	135.8	20	229.7	265.5	148.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², 천 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건수 (필지)	수량	금액
취득	계		6 (10)	51,023	9,096,389	4 (1)	24,773.68	86,225,543	10 (11)	75,796.68	95,321,932
	1.매입	토지	3 (10)	49,127	1,102,389				3 (10)	49,127	1,102,389
		건물									
	2.교환	토지				1 (1)	618	800,310	1 (1)	618	800,310
		건물				1	185.78	15,233	1	185.78	15,233
	3.기타	토지									
		건물	3	1,896	7,994,000	2	23,969.9	85,410,000	5	25,865.9	93,404,000
처분	계					2 (1)	3,156.1	2,505,407	2 (1)	3,156.1	2,505,407
	4.매각	토지									
		건물									
	5.양여										
	6.교환	토지				1 (1)	1,484	1,576,008	1 (1)	1,484	1,576,008
		건물				1	1,672.1	929,399	1	1,672.1	929,399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당 초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1	임야	임야	회원읍	명곡리	931	18,105	18,105	143,210,550	2021. 4.	회원 명곡 산림욕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원읍 천내리 401-3	대한예수교장로회 회원교회 대표자 신용기	
2	임야	임야	회원읍	명곡리	931-1	7,980	7,980	53,625,600					
3	임야	임야	회원읍	명곡리	909-1	19,834	19,834	137,052,940					
4 (건물)	복지 시설	복지 시설	논공읍	금포리	1805-1 1805-20 1805-21 1805-22 1805-24 1805-25 1805-26 1805-27 1805-28 1805-35 1805-36 1805-37	1,400	1,400	4,294,000,000 (건축비)	2022. 3.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5 (공작물)	종교 용지	종교 용지	현풍읍	성하리	464	1식	1식	1,900,000,000 (사업비)	2022. 2.	충훈탑 정비사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충훈탑 재건립
6	대	대	논공읍	남리	271	271	271	87,641,400	2021. 2.	논공 남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54, 109동 802호	안애란	
7	대	대	논공읍	남리	272	304	304	95,456,000			경기도 부천시 장말 로71, 1503동 806호	김미경	
8	대	대	논공읍	남리	273	410	410	128,576,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123, 105동 1901호	유태형	
9	전	전	논공읍	남리	274	157	157	50,616,800					
10	대	대	논공읍	남리	267	605	605	189,970,000					
11	답	답	논공읍	남리	359	241	241	77,770,700					
12	답	답	유가읍	가태리	572-1	1,220	1,220	138,470,000	2021. 2.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구례길 118-5	곽동준	
13 (건물)	대	대	옥포읍	교항리	2961	495	495	1,800,000,000 (사업비)	2021. 9.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센터 3층 증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증축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계							24,773.68	86,225,543,960					
1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54-4	618	618	800,310,000	2021. 5.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경북지방우정청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구. 회원 우체국
2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54-4	185.78	185.78	15,233,960					
3 (건물)	대	대	다사읍	매곡리	1553	5,113.9	5,113.9	19,000,000,000 (건축비)	2023. 7.	달성북부권 복합행정 시설 조성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4 (건물)	대	대	회원읍	천내리	426-1 445-2 446-2 447-1 448-2	18,856	18,856	66,410,000,000 (건축비)	2024. 6.	달성군 회원공공 복합청사 리뉴얼사업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 추 가

연번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처분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공시지가 × 면적)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계							3,156.1	2,505,407,200					
1	대	대	현풍읍	원교리	93-1	1,484	1,484	1,576,008,000	2021. 5.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대구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구. 달성군 보건소
2 (건물)	대	대	현풍읍	원교리	93-1	1,672.1	1,672.1	929,399,200					

위 치 도(취득재산)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 위치: 화원읍 천내리 454-4번지(구. 화원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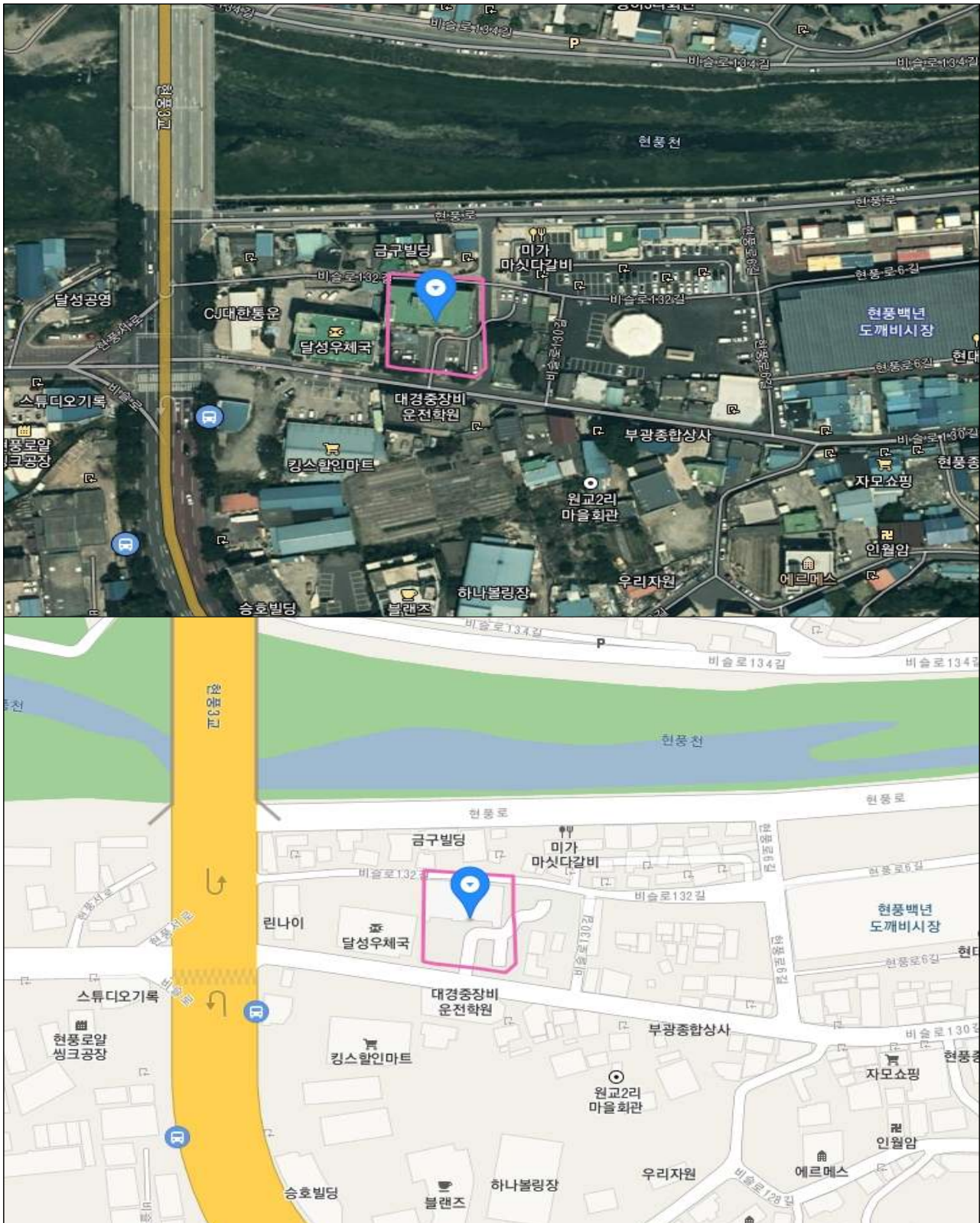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 위치: 화원읍 천내리 454-4번지(구. 화원우체국)



위 치 도(처분재산)

□ 위치: 현풍읍 원교리 93-1번지(구. 달성군보건소)



현 장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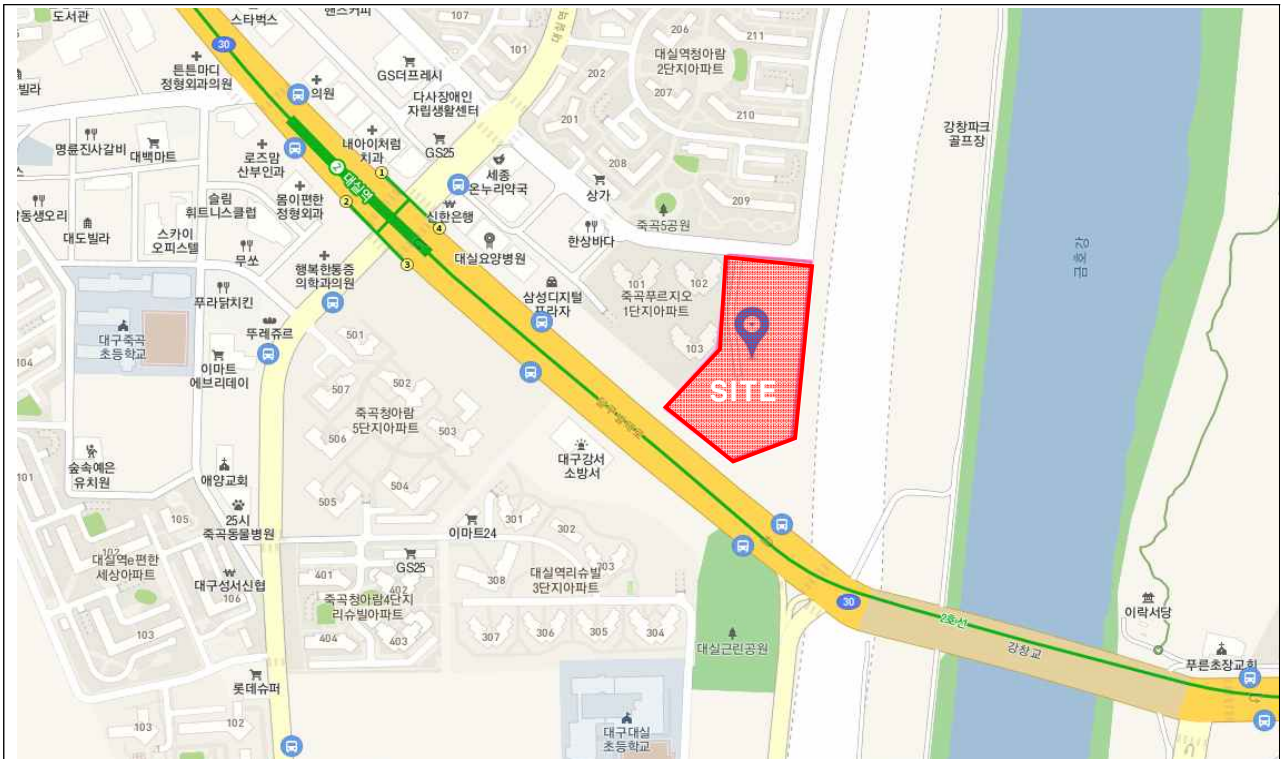
□ 위치: 현풍읍 원교리 93-1번지(구. 달성군보건소)



위 치 도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변경)】

□ 위치: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배 치 도(안)

□ 위치: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위 치 도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 위치: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외 4필지



조 감 도

□ 위치: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 외 4필지



II. 검토의견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국유재산 교환요청에 따른 국·공유지 교환

- 경북지방우정청에서 달성우체국 업무시설 활용목적으로 국유재산(구. 화원우체국)과 군유재산(구. 달성군보건소)을 교환 요청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교환을 통한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교환 후 달성군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에 따른 화원읍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현. 달성군민독서실)의 주차장 부지 활용 등 향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조성 변경

- 달성 북부권(다사·하빈)은 인구 10만명 가까이 성장한 지역으로서 인구수와 인구밀도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이 적은 편이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공시설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북부보건센터(보건),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 다함께돌봄센터, 공동 육아나눔터(보육),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도입한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 인프라를 지원코자 함이며, 추가 입주시설 수요조사(군의회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를 통한 세부 시설 변경내용 반영에 따른 규모증가(건축연면적 3,500㎡→5,113.9㎡) 및 사업비 증액(300억→400억)으로 변경 심의 요청을 하는 것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 현재 사업지 내 화원읍행정복지센터(1990년 준공), 보건지소(1987년 준공)는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이 매우 노후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최근 화원읍을 비롯한 반경 5km 이내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행정·복지적 수요를 뒷받침할 공공복합시설의 건립이 요구됨. 따라서 화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와 문화·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일반재산 교환 시 소유권 이전은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되,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2월 26일

2. 제 출 자 : 최상국 의원, 하중환 의원

3. 제안사유

-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책무, 추진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안 제3조~제5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 콘텐츠의 활용, 보조금 준용
(안 제6조 ~ 제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5조 책무, 추진계획 수립,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우수 콘텐츠의 활용, 보조금 준용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의 매체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발표, 비영리 목적의 유통 및 보급,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에 힘쓰는 것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고 경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활성화 및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확산·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④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계획
2. 예산지원 규모, 협력방안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군수는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준용)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월 19일

2. 제 출 자 : 하중환 의원

3. 제안사유

-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적용 범위, 책무(안 제3~제5조)
-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 회의 등(안 제6조 ~ 제10조)
- 수당 및 여비, 재정지원, 생태관광지 지정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포상(안 제11조~제15조)

5.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5조 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적용 범위,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제10조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장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 ~ 제15조 수당 및 여비, 재정지원, 생태관광지 지정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포상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우수한 생태자원과 자연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생태관광 활성화 원칙) 생태관광 자원의 발굴과 육성은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생태관광지를 보호하고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사업이 주민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목표 및 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태관광위원회 설치) ①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3.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
4.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사업
5.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① 군수는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생태탐방객의 안내와 편의제공에 필요한 생태관광방문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3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개정)사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함.

4.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당초 ‘주요사업’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 (안 제7조)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24조)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재정 및 실무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25조)

5.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설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코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7조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당초 ‘주요사업’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에 관한 사항
- 안 제24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설치 근거와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 안 제25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재정 및 실무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주요사업에 대한” 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하여” 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를 삽입한다.

제17조제1항 중 “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 를 “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주민예산학교” 를 “주민예산학교 및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지원” 을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회원은 위원회 부위원장 및 기획예산

실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위촉직 회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⑧ 연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5조(중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 및” 을 각각 “위원회, 연구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 을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 으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6장 지원” 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생 략) ② 군수는 필요시 <u>주요사업에</u> <u>대한</u>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 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예산편성 등 예</u> <u>산과정에 대하여</u> ----- ----- -----.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u>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u> <u>원회를</u>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② ~ ⑦ (생 략) 제5장 <u>주민예산학교</u> 제6장 <u>지원</u> <신 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 ----- <u>분과위원회</u> ----- -----.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u>주민예산학교 및</u> <u>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u> <삭 제> 제24조(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① <u>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u> <u>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u> <u>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u> <u>경우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u> <u>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u> <u>· 운영할 수 있다.</u> ② <u>연구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u>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
직 및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하
고, 당연직 회원은 위원회 부위
원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 회원은 제17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한 1명,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연구회 회원의 임기는 당연
직 회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
원의 임기는 전임 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연구회 위촉직 회원의 해촉
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
용한다.

⑤ 연구회 회장과 부회장은 연
구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
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4.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예산관련 토론회·공청회 등에 대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연구

⑧ 연구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4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제6장 지원

제25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
--- 위원회, 연구회, -----

-----.

② ----- 위원회, 연구회, -----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생략)

-----.

③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과 연구회 위촉직회원 -----

-----.

제26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3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개정)사유

- 「지방회계법」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의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총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신설. (안 제4조)
-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정함. (안 별표1, 별표2)

5.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3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 단체 금고 지정 기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지방회계법」 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과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별표2)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4조 총 금고의 수가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 신설에 관한 사항
- 안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사항
- 안 별표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제1항 중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후단 신설>	제4조(금고의 수)----- ----- ----- -----.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달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 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7점) - 자기자본이익율 (6점) - 대손충당금적립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 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 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 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 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된 경우 만점처리 가능	30 8 22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정기예금 만기 경과시 적용금리	19 7 6 4 1 1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21 7 7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3 6 8 8 1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별표2】

달성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안)

1. 일반원칙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다. 제나호에 불구하고 항목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3가(지역주민이용 편리성), 항목 5가(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의 경우 평가 등급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금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설치 대수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세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체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1) 지역사회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과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2021년 3월 8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및 뮤지컬로 배우는 음식문화개선 사업 미운영으로 2021년도 수입의 예치금회수 및 지출의 예치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변경되어 지방기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변경계획(안)

- 식품진흥기금 총 비교증감액 : 금 54,525천 원

(단위 : 천 원)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229,338	174,813	54,525
	· 세외수입	44,000	44,000	-
	· 보조금	32,000	32,000	-
	· 보전수입 등			
	- 예치금 회수(714-01)	153,338	98,813	54,52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229,338	174,813	54,525
	·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89,600	89,600	-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39,198	84,673	54,525
	- 보전지출			
	예치금	104,848	50,523	54,325
	- 반환금 기타	34,350	34,150	200
	시비보조금 반환금	14,350	14,150	200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000	20,000	-
	기타	540	540	-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검토의견

-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이유는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달성(향토·전통)음식경연대회 및 뮤지컬로 배우는 음식문화개선 사업이 미운영 됨에 따라 2021년도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 미운영된 사업의 사업비를 2021년도 기금 수입으로 반영하고 그 중 200천원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나머지 54,325천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므로 기금운용 목적에 타당함.
 - 위와 같이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심의요구서 1부

2) 상위 및 관계 법령 1부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 심의요구서

심의요지	○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심의사유	○ 기금 결산에 맞는 예치금액 반영 및 보조금 반환을 위해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운용 변경계획(안) 심의 요구																																																															
변경·심의 사항	○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단위 : 천 원) <table><tr><th>구 분</th><th>세부사업(편성목)</th><th>경정액</th><th>기정액</th><th>증 감</th></tr><tr><td rowspan="5">수 입 변경 계획</td><td>수입 총계</td><td>229,338</td><td>174,813</td><td>54,525</td></tr><tr><td>· 세외수입</td><td>44,000</td><td>44,000</td><td>-</td></tr><tr><td>· 보조금</td><td>32,000</td><td>32,000</td><td>-</td></tr><tr><td>· 보전수입 등</td><td></td><td></td><td></td></tr><tr><td>- 예치금 회수(714-01)</td><td>153,338</td><td>98,813</td><td>54,525</td></tr><tr><td rowspan="9">지 출 변경 계획</td><td>지출 총계</td><td>229,338</td><td>174,813</td><td>54,525</td></tr><tr><td>·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td><td>89,600</td><td>89,600</td><td>-</td></tr><tr><td>·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td><td>139,198</td><td>84,673</td><td>54,525</td></tr><tr><td>- 보전지출</td><td></td><td></td><td></td></tr><tr><td>예치금</td><td>104,848</td><td>50,523</td><td>54,325</td></tr><tr><td>- 반환금 기타</td><td>34,350</td><td>34,150</td><td>200</td></tr><tr><td>시비보조금 반환금</td><td>14,350</td><td>14,150</td><td>200</td></tr><tr><td>과징금 과오납금 반환</td><td>20,000</td><td>20,000</td><td>-</td></tr><tr><td>기타</td><td>540</td><td>540</td><td>-</td></tr></table>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229,338	174,813	54,525	· 세외수입	44,000	44,000	-	· 보조금	32,000	32,000	-	· 보전수입 등				- 예치금 회수(714-01)	153,338	98,813	54,52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229,338	174,813	54,525	·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89,600	89,600	-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39,198	84,673	54,525	- 보전지출				예치금	104,848	50,523	54,325	- 반환금 기타	34,350	34,150	200	시비보조금 반환금	14,350	14,150	200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000	20,000	-	기타	540	540	-
구 분	세부사업(편성목)	경정액	기정액	증 감																																																												
수 입 변경 계획	수입 총계	229,338	174,813	54,525																																																												
	· 세외수입	44,000	44,000	-																																																												
	· 보조금	32,000	32,000	-																																																												
	· 보전수입 등																																																															
	- 예치금 회수(714-01)	153,338	98,813	54,525																																																												
지 출 변경 계획	지출 총계	229,338	174,813	54,525																																																												
	· 식품진흥(식품진흥기금)	89,600	89,600	-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39,198	84,673	54,525																																																												
	- 보전지출																																																															
	예치금	104,848	50,523	54,325																																																												
	- 반환금 기타	34,350	34,150	200																																																												
	시비보조금 반환금	14,350	14,150	200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	20,000	20,000	-																																																												
	기타	540	540	-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영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 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24.>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

※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참조

-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시, 기존 ‘재무활동’ (예치금의 상위개념) 금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필요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